

성어 (盛魚) 기의 안전조업 및 지도

수 산 청 생 산 국 지 도 과

수산기좌 최 영 훈

불철주야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거센파도와 싸우며 수산물 증산과 복지어촌건설을 위하여 분투하는 어민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수산청에서는 어민여러분의 안전조업을 돕기 위하여 어민여러분께서 준수해야 할 안전조업규칙(4부합동부령)을 '85. 6. 7자로 대폭 개정하였으며 "선박통제규정"(4부합동훈령: '85. 6. 7 제정)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를 철저히 숙지하여 어민여러분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제반수칙을 잘 지켜서 어선의 해난사고와 접적해역에서의 월선피납을 예방하기 바란다.

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10톤 이하도 가능함)

○ 순회교육: 10톤 미만 어선과 양식채취선의 간부선원에 대하여 항포구를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교육

○ 보충교육: 정기교육 미이수자에 실시하는 집합교육 및 순회교육

2) 조업자제해역의 출항전 교육

대화퇴 및 동지나해역 출어선장에 대한 교육

3) 특정해역 출어선 교육

특정해역 출어선에 대하여 등·서해 어로보호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4) 기타교육

전달교육, 어민예비군교육, 선주간담회, 특별교육 등이 있음.

1. 어민 교육

어민교육의 근거는 수산업법제 5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 55조 제2항과 선박안전조업규칙 제 27조(해상조업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로 그 목적은 연근해어선원들에 대하여 해상안전조업에 관한 기본적인 기술교육과 제반법규, 안전보정신교육 및 경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선의 월선피납 및 해난사고를 예방하고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소득증대에 기여함에 있으며 교육의 종류, 교육의 실행 등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의 종류

1) 정기교육

○ 집합교육: 10톤 이상 동력어선의 간부선원

나. 교육의 실행

1) 정기교육

○ 교육주관: 업종별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교육기간: 연 1회 5시간

○ 교육대상: 원양어선을 제외한 연근해어선의 간부선원(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

○ 업무와 기능

- 수산청: 기본교육계획수립과 방향지시 또는 승인, 교육통제감독, 교육실태분석 및 정책에 반영.

- 수협중앙회: 기본교육계획수립과 조정, 교육교재 제작보급, 교육실태 파악분석 및 통제감독과 교육실적 보고

- 수협중앙회 도지부: 관내 조합의 교육계획

조정 및 시행감독, 집합교육 현장감독 및 이수증 확인, 교재제작보급(소형어선위주), 교육실태 파악 및 실적보고.

- 조합 : 자체 교육계획수립 및 실시교육대상자, 명부비치 및 이수증 발급, 교육실적보고.

○ 교육내용

- 정부시책의 이해증진 : 영도자의 통치지도 이념, 수산시책 등

- 안보교육 : 시사성 안보정신교육, 의아선박식별신고요령, 간첩선침투사례 긴급보고제도 등

- 소득개발 기술지도 : 양식개발지도(양식채취선의 선원)

- 국민경제교육 : 우리경제의 현황과 전망, 국산품애용과 외채절감, 불가안정의 정착 및 저축의 생활화 등

- 안전조업교육 : 어로한계선 및 조업자제선, 안전점검 운영요령, 안전조업수칙 및 출입항수속절차, 해역별특성 및 태풍피해극소화 대책 등

- 시청각교육 : 해상안전조업(스라이드), 해난사고예방(스라이드) 및 안전조업시범교육(V.T.R) 등

- 직무기술교육 : 안전운항법 및 황천항해술, 자차수정 및 해도독도법, 무선통신운용 및 통신보안, 해양기상, 기관안전수칙 및 예비품점검과 통신기고장 응급처치요령 등

○ 교육계획수립

- 수협중앙회는 어민교육지침을 수립 수협도지부에 시달한다.

- 수협도지부는 시행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실적에 맞는 교육목표를 책정 부여한다.

- 각 조합은 조합별 교육목표에 의거 월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실시한다.

○ 교육대상자 명부

- 각 조합은 수협중앙회장 책임하에 교육대상자 명부를 작성비치한다.

-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시는 교육명부에 교육일시를 기록하고 조합장이 확인 날인한다.

○ 교육실시

- 시청각 및 시범식교육실시 : 교재, 차드, 스프라이드 및 VTR 활용과 유능한 강사 초빙

- 직능별 분리 교육실시 : 어로선원과 양식채

취선원을 분리하여 선주반, 선장반, 기관장반, 통신장반으로 분리 교육

- 집합교육, 순회교육을 실시

○ 교육사항 기록유지

참석자 명단과 교육장면 사진을 첨부한 교육일지를 기록유지토록 한다.

○ 교육이수증 발급

- 교육이수자에게는 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유지토록 한다.

- 교육 유효기간은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 교육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 교육미이수 간부선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교육기회를 부여

- 각 조합장은 교육미이수어선(선원)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조하에 출항금지 조치.

○ 경비부담

수협에서 모든 교육경비 일체를 부담한다.

2) 조업자제해역의 출항전 교육

○ 교육대상자 : 대화퇴 및 등지나해 출어선 선장을 대상으로 하며 출입항통제소와 합동신고소에 근무하는 안전점검요원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교재 배부와 대장을 기록유지한다. 수협중앙회에서는 교재의 작성보급을 하며 교재내용에 대한 수집제공은 수협도지부와 해당조합에서 하고 교육시행협조는 해당조합에서 협조 시행한다.

○ 교육내용

시사성 있는 안보정신교육, 의아선박식별신고요령과 안전조업수칙 및 지시사항을 주로 하며 교육실시결과는 교육대장에 기록유지하도록 한다.

2. 출입항신고 및 통제

가. 출입항 신고기관의 현황

○ 통제소(14 개소) : 인천, 화수, 장봉, 덕적, 연평, 백령, 강화, 대진, 거진, 속초, 울릉, 삼척, 동해 및 주문진이며, 구성은 경찰 및 수협요원으로 대상은 특정해역, 자제해역 및 일반해역 출어선으로 한다.

○ 합동신고소(23 개소) : 후포, 포항, 구룡포, 감포, 방어진, 장항, 군산중동, 군산해망, 곰소, 마산, 충무, 삼천포, 거문도, 목포서산, 목

포동명, 여수봉산, 여수중앙, 흑산, 다대포, 부산, 제주, 서귀포, 추자이며 구성은 경찰 및 수협요원으로 대상은 자제해역, 일반해역 출어선을 담당한다.

○ 신고소(검산신고소의 712 개소) : 경찰요원이 담당하며 일반해역출어선을 담당한다.

○ 대형신고소(삼도신고소의 852 개소) : 민간인으로 항포구내 거주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자로 하여금 일반해역출어선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한다.

나. 출입항 신고

- 출입항신고서 2부를 신고기관에 제출하고 1부는 신고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선박에 비치한다.

- 출입항신고서에는 선원명부와 어선구비서류확인증을 동시에 제시한다.

- 어선구비서류확인증은 그 어선의 선적항에 설치된 통제소 또는 합동신고소에서 발급하며 발급시에는 어선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어업허가장, 무선국허가장, 무선국가입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수협안전점검요원 운용

수협안전점검요원의 자격은 선박검사업무의 경력이 있는 자, 5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자, 수산계 및 해양계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어선안전점검업무와 관련이 있는 학교를 이수한 자로 조합장이 발급한 안전점검요원증을 휴대하고 흰색바탕에 청색으로 "안전점검요원"이라고 표기한 완장과 지정된 모자를 착용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요원의 임무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 출어선에 관한 출어등록, 조업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이수의 확인, 어선단의 편성, 어선검사증서유효기간의 확인, 어선항해장비(나침의, 해도, 구명등의)비치여부의 확인 및 안전점검, 출어등록현황에 관한 어업무선국과 어로보호본부에의 통보, 선원자격(해기사, 면허증, 선박통신사 자격증, 선원수첩)의 확인, 어업무선국에의 가입여부확인, 기타 어로보호본부의 수산연락관 및 해운연락관과의 업무협

조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 안전점검요원의 근무요령

2부교대제로 근무를 하되 근무시간은 04시 00분~20시 00분까지로 하고 근무중 취급한 사항은 빠짐없이 근무일지에 기재하고 1개월분을 종합하여 조합장의 결재를 받는다. 출입항신고서를 접수한 때는 지체없이 수협 및 경찰요원의 확인을 거쳐 신고기관의 확인을 득한 후 1부는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1부만 보관한다. 당해 항포구 선적어선과 당해 항포구를 근거지로 하여 출입하는 어선현황을 파악 선박기본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요원의 점검사항

어선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어업허가장, 선박무선국허가장, 어업무선국가입증 등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되 어선구비서류확인증을 발급받은 어선은 그 확인증 제시로써 가름한다. 선원구비서류확인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선원수첩 소지의무자의 선원수첩 소지여부, 선원수첩 기재사항(소양교육, 신체검사, 승하선공인, 검역 등)의 확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해기사의 승선여부, 어선의 안전점검은 해도(가급적 최신판) 비치여부 및 수로고시에 의한 해도수정여부, 나침의, 무전기 등의 작동상태, 구명등의 비치여부, 선동(장동, 선미동, 정박동, 어업동)의 부착 및 점등이 되는지 여부

○ 점검결과 조치

다음 사유가 있을 때는 출항을 금지하되 그 사유에 대한 조사 또는 조치가 완료되는 즉시 출항시킨다. 기상특보가 발령되었을 때, 승선인원이 신고된 내용과 상이하거나, 선원이 불확실한 자가 승선하고 있을 때, 선내에 불온물품, 또는 총기, 도검류, 폭발물 등이 발견되었을 때, 나침의, 해도, 구명등의 등의 규정된 장비 및 의장품의 불비 또는 작동불량으로 안전항해가 우려될 때, 밀수, 밀항 기타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

○ 출어등록

각 통제소 또는 합동신고소에 하여야 하며 그 대상어선은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으로서 어업허가 면허 또는 신고된 어선, 다만, 황해 및 동지나해 조업자제해역출어선은 매년 1월중에 출어등록하여야 하며, 출어등록어

선은 일반어선과 운반선을 구분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출어등록대장에 기록유지하며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임.

- 선단편상
 - 특정해역 및 대화퇴어장출어선 : 3척 이상
 - 황해 및 동지나해의 선단강화해역
-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출어선 : 2통 이상
- 대형선망출어선 : 1개선단 이상
- 기타 출어선 : 3척 이상
 - 조업자제해역 및 일반해역 : 2척 이상
 - 선단장선지정 : 선장의 지휘능력 및 어선장비 참가(로란, 방탐기, 통신기 등)하여 수협요원이 지정한다.

3. 조업지도

가. 조업해역의 구분

1) 특정해역

동해 특정해역 및 서해 특정해역으로 구분하고 어로한계선(성어기의 어로허용선을 포함)과 다음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간의 해역을 말한다.

- 동해 특정해역
 - 북위 38도 30분, 동경 132도 37분
 - 북위 38도 00분, 동경 132도 50분
 - 북위 37도 27분, 동경 132도 19분
 - 북위 37도 27분, 동경 130도 30분
 - 북위 38도 15분, 동경 130도 00분
 - 북위 38도 15분선과 육안과의 교차점
- 서해 특정해역
 - 북위 37도 30분, 동경 126도 00분
 - 북위 37도 00분, 동경 126도 00분

2) 조업자제해역(어장)

동해대화퇴 조업자제해역, 황해 조업자제해역 및 동지나해 조업자제해역으로 구분하고 조업자제선과 다음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간의 해역을 말한다.

- 대화퇴 조업자제어장
 - 북위 37도 27분, 동경 132도 19분이동 연장선
 - 북위 38도 00분, 동경 132도 50분
 - 북위 38도 30분, 동경 132도 37분
- 황해어장

- 북위 33도 00분, 동경 125도 10분이서 연장선
- 북위 33도 30분, 동경 124도 30분
- 북위 37도 00분, 동경 124도 30분
- 북위 37도 00분, 동경 124도 00분
- 동지나해어장
 - 북위 35도 00분, 동경 121도 00분
 - 북위 25도 00분, 동경 127도 00분
 - 북위 32도 30분, 동경 127도 00분과 남, 서해측 공동규제수역을 따라
 - 북위 33도 00분, 동경 125도 10분이서 연장선

○ 선단강화해역

황해, 동지나해 조업자제선으로부터 다음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간의 해역을 말한다.

- 북위 37도 00분, 동경 124도 40분
- 북위 36도 15분, 동경 124도 10분
- 북위 35도 13분, 동경 122도 46분
- 북위 34도 25분, 동경 122도 46분
- 북위 33도 05분, 동경 123도 34분
- 북위 33도 05분, 동경 123도 45분
- 북위 31도 30분, 동경 124도 30분
- 북위 30도 44분, 동경 124도 58분
- 북위 28도 43분, 동경 124도 04분
- 북위 27도 00분, 동경 122도 40분
- 북위 25도 00분, 동경 121도 40분

나. 선단조업

어선단 이탈시는 어업무선국장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이탈할 수 있다. 그 이탈사유는 어선장비의 고장, 인명사고, 조기만선, 일반안전해역으로의 조업장소이동 및 기상악화에 따른 피항 등이며 잔류어선이 1척일 경우에는 어업무선국장은 다른 선단에 편입시킨다.

다. 출어선 위치보고

○ 어업무선국에의 교신가입

통신기가 설치된 어선은 선적지항 또는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어업무선국에 교신가입을 하고 가입증을 발부받아야 하며 연 2회(상·하반기) 어업무선국장의 교신가입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 해역별 보고방법 및 어업무선국

- 동·서해 특정해역출어선은 다음 지정어업 무선국에 보고

동해 : 속초, 주문진, 동해, 울릉어업무선국

서해 : 인천어업무선국

- 자제 및 일반해역출어선 : 출항지어업무선국, 단 서해는 북위 36도 이북의 30톤 이상어선은 인천어업무선국에 보고

- 어업무선국의 증계보고

지정어업무선국 또는 출항지 어업무선국과의 직접교신이 불가능할 때에는 인근어업무선국에 증계보고할 것을 의뢰하여야 하며 증계의뢰를 받은 인근어업무선국은 지체없이 당해 지정어업무선국 또는 출항지어업무선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선단장선의 일괄보고

어선단조업을 할 때에는 선단장선이 소속선단선의 위치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다.

- 통신기 고장선박의 위치보고

출어중인 어선이 통신기의 고장으로 규정에 의한 위치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반드시 소속선단의 다른 어선에 그 사유를 알려 다른 어선을 통하여 위치보고를 대행토록 하여야 한다.

- 위치보고의 대행

타 어선의 위치보고를 대행할 때에는 반드시 가시거리 이내에서 조업하는 것이 확인된 선박이라야 한다.

- 위치보고 방법

다음 사항을 어업무선국 호출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고한다. 조업위치이상유무, 보고선명.

예 : 157 - 6 해구 안전조업중 33 한성호 선장

- 위치보고 회수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어업무선국의 위치보고는 지정시간에 보고한다.

특정해역 출어선 : 1일 3회 이상 단, 대화퇴 어장 및 황해, 동지나해 어장, 출어선 중 조업자제선부근의 선단편성강화해역 출어선은 1일 3회 위치보고를 하여야 하며 비상시에는 1일 6회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조업자제해역(황해·동지나해)출어선 : 1일 2회 이상

일반해역출어선 : 1일 1회 이상, 단 다음 대상어선은 1일 2회 동해에 있어서는 삼척항 북

단에서 북위 37도 27분, 동경 130도 30분에 이르는 선과 북위 38도 15분선내의 일반해역출어선(10톤 미만은 제외) 대형트롤어선, 서해의 북위 36도 이북해역 10톤 이상어선, 동해의 북위 36도 30분 이남, 동경 128도 이동의 장어통발어선.

기타 선단을 이탈하여 단독귀항하는 어선 : 매 4시간마다 보고

- 어업무선국장의 어선위치 종합보고

동·서해 특정해역출어선 및 어로보호본부

기타 해역출어선 : 수산청

라. 위치보고 미이행선의 처리

어업무선국장은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한 어선에 대하여 전파탐지 등으로 추적하여 그 위치를 확인하고 다음 위치보고시까지도 위치보고를 아니한 어선에 대하여는 해당어로보호본부 통제소 또는 합동신고소와 수산청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단, 다음 경우는 즉시 어로보호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서해특정해역 및 서해 36도 이북 출어선중 조업자제선부근 선단편성강화해역출어선이 위치보고를 미이행한 때

마. 출어선의 경보청취 의무

- 통신기가 설치된 선박은 매시 정각부터 3분간씩 통신기를 개방하여 긴급사태경보에 관한 사항을 청취하여야 한다.

- 라디오를 비치한 선박은 매 뉴스시간마다 긴급사태경보에 관한 뉴스를 청취하여야 한다.

바. 어장별 지도

○ 대화퇴 및 동지나해어장

- 조업상황

구 분	대화퇴어장	동지나해어장
주 어 기	6. 15~12. 31	3. 1~7. 31
대상어종	오징어	조기, 부세, 병어, 쥐치, 갈치 등
어업별	채낚기	저인망, 안강망, 유자망, 선망어업 등

- 조업지도

지도선은 1~2척이 출어선의 동태를 파악하며 기동성있게 신속히 대처하며 속초어업무선국은 매일의 출어선현황을 종합하여 지도선에 통보하고 지도선선장은 조업자제선월선방지를 위하여 선단편성, 어선위치파악 등을 수행 지도선선장 및 측위어업무선국장은 일몰 후와 일몰 전에 조업선측위시행

○ 황해조업자제해역

주어기: 9월~익년 4월

대상어종: 조기, 부세, 병어, 갈치, 삼치 등
어업별: 저인망, 안강망, 유자망 등

- 조업지도

서해취약해역(북위 36도 이북) 출어선 특별관리, 30톤 이상 전 출어선 동태파악 어선위치보고: 1일 2회 30톤 이상어선은 인천어업무선국에 30톤 미만 어선은 출항지 어업무선국에 보고 어업무선국과 출입항신고기관과의 업무협조, 어선출입항 상황을 상호통보, 어업무선국은 입항에정보고접수시 출입항신고기관에 통보하고 출입항신고기관의 입항통보시까지 위치보고 추적.

특별관리어선동태파악

어업무선국은 필요시 당해어선을 호출 위치확인(측위실시)

지도선출동: 1척

지도담당해역을 책임지도, 출어선동태파악지도
수협 승선지도원배치: 10명 내외

위치보고 및 선단조업확행지도, 어선중계를 통한 어업무선국 교신금지지도, 월선피납예방지도 및 조업지도

사. 어로 또는 항해제한 해역

○ 야간어로 또는 항해금지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방위협의회의와 협의조정하여 고시한 해안선 또는 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의 해역에서는 다음 시간에 어로 및 항해를 금지한다(완화 조정할 수 있다).

- 4월 1일~10월 31일: 20:00~04:00

- 11월 1일~3월 31일: 18:00~04:00

○ 주간어로 또는 항해가능해역

어로한계선, 조업자제선 및 성어기 어로허용선 을 월선하여 주간에 어로 또는 항해가 가능한

해역

- 대진항과 저진항북단의 연안 1마일 이내의 해역(저도주위 300미터 이내의 해역을 포함하여 고성군수협대진지소 소속어선에 한하여 어로 가능) 다만, 저도 주위 300미터 이내의 해역에서는 4월 1일~9월 30일까지만 가능

- 대연평도 최동단~북위 37도 30분, 동경 125도 50분~북위 37도 30분, 동경 125도 40분, 대연평도서단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

- 백령도서남단(북위 37도 55분, 동경 124도 39분)으로부터 이섬동단(북위 37도 57분 30초, 동경 124도 45분)에 이르는 선과 소청도동단(북위 37도 46분 30초, 동경 124도 46분 30초)의 연안 1마일내의 해역.

○ 특정해역내의 어로제한

- 특정해역에 출어코자 하는 어선은 통신시설, 나침의 해도, 구명동의, 조석표, 라디오 등 관계부처의 장이 정하는 장비를 갖춘 동력선에 한한다. 다만, 특정해역과 인접한지역 어민이 보유한 무동력선 및 10톤 미만의 어선은 예외로 하되 닳과 노를 비치하여야 한다.

- 10톤 미만의 어선은 동해는 동경 131도 00분 이동의 해역, 서해는 동경 125도 00분 이서의 해역에 출어할 수 없다. 다만, 울릉도기지로 하여 조업하는 어선은 울릉도주위로부터 60마일까지 출어가 가능하다.

○ 특정해역이외의 해역에서의 어로제한

- 동해: 어로한계선과 어업자원선의 교차점에서 정동으로 연결선의 이북 해역에는 20톤 미만의 출어선은 출어할 수 없다. 다만 모자선식조업 중 15톤 이상의 자선은 가능하다.

- 서해: 어로한계선과 다음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에서는 3월 1일~10월 31일까지 관계부처의 장이 정하는 장비를 갖춘 동력선 또는 특정해역과 인접한 지역어민이 보유한 무동력선 및 10톤 미만의 어선으로 닳과 노를 비치한 어선에 한하여 어로를 할 수 있다.

해역은 다음과 같다.

북위 37도 30분, 동경 126도 03분

북위 37도 30분, 동경 126도 16분

석모도 최남단